4월 납품업체 위생교육			
교육일시	2025년 월 일		
교육제목	개인위생관리 I - 건강검진/일일 건강상태 확인/감염질환		
교육장소	식생활관 또는 유인물	교육자	영양사
교육대상자	4월 납품업체		

★ 개인위생관리

가. 건강진단: 1회/6개월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(폐결핵검사는 연1회)

■ 검진항목 : 장티푸스, 폐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

나. 일일 건강상태 확인 ① 설사, 발열, 복통, 구토 증상 여부

② 손, 얼굴에 화농성 상처나 종기가 있는지 여부

■ 본인 및 가족 중 법정 전염병(콜레라, 이질, 장티푸스 등) 보균자가 있거나 발병한 경우, 조리작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

1 건강검진(보건증 발급)



● 건강검진실시(건강진단결과서): 6개월에 1회 실시

❷ 검진기관: 지역 보건소

❸ 검진항목: 장티푸스, 세균성이질, 결핵,

전염성피부질환

₫ 검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.

※ 근거: (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)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식재료 공급업체 직원 중 완전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를 운반하는 자는 건강검진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.

2 일일 건강상태 확인



- 매일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.
- 발열, 복통, 설사,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.
- * 기타 증상: 인후염, 피부발적/습진, 결핵, 진물이나 고름(눈, 귀, 코), 알레르기 질환, 피부감염(화상, 화농성질환 또는 상처 등)
- ❸ 본인 및 가족 중 법정감염병(콜레라, 이질, 장티푸스 등) 보균자 및 노로바이러스 질환이 있는 경우, 회사에 알리고 식품취급을 하지 않도록 한다.

3 감염질환이란?

-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세균, 바이러스 및 기생충이 원인
- 식품 취급 등에 제한을 받는 법정 감염병
 - ▶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 이질,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, A형 간염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제1군 감염병)
 - ▶ 감염성 결핵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 제4호)
 - ▶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

건강진단 조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!!

- 소화기계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(제1군 감염병)
- 결핵환자
- 피부병 및 화농성질환자
-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

주의사항

검사 결과 확인하기(검사항목: 장티푸스, 폐결핵, 전염성피부질환) 만료일자 전에 검사받고 진단서 찾아두기



매년 2회

[자료출처 : 서울교육청2019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 위생관리 가이드북]